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성 북 구 의 회**



# - 목 차 -

■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총괄) . . .	1
● 운 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15
● 보건복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23
● 도시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33
● 행정기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 . . .	42



#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 감사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3.(금) [9일간]

## ■ 감사주체

- 4개 상임위원회
  -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 ■ 감사대상기관

- 운영위원회 : 의회사무국
- 보건복지위원회 : 복지교육국, 보건소, 월곡1동, 정릉2동
-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장위3동, 정릉3동
- 행정기획위원회 :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석관동, 정릉4동

## ■ 감사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 감사장소

- 성북구의회 각 위원회 회의실, 주민센터 등

## ■ 위원회별 편성내역

- 감사위원편성

위 원 회 별	감 사 위 원	인 원
운 영 위 원 회	이호건 위원장 외 8인	9명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 외 6인	7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 외 6인	7명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 외 6인	7명

- 주민센터 감사반

위 원 회 별	감 사 위 원	감사대상 주민센터	인 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 외 6인	월곡1동, 정릉2동	7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 외 6인	장위3동, 정릉3동	7명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위원장 외 6인	석관동, 정릉4동	7명

## ■ 감사일정

위원회별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월일	시간		
운영	6.22.(목)	10:00 ~	성북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6.23.(금)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보건복지	6.15.(목)	10:00 ~ 18:00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16.(금)	10:00 ~ 18:00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6.19.(월)	10:00 ~ 18:00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6.20.(화)	10:00 ~ 14:00	월곡1동 주민센터	월곡1동 주민센터
		14:00 ~ 18:00	정릉2동 주민센터	정릉2동 주민센터
	6.21.(수)		의정활동 자료 수집	
	6.22.(목)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23.(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도시건설	6.15.(목)	10:00 ~ 18:00	도시정비신속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6.16.(금)	10:00 ~ 18:00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6.19.(월)	10:00 ~ 18:0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6.20.(화)	10:00 ~ 14:00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3동 주민센터
		14:00 ~ 18:00	정릉3동 주민센터	정릉3동 주민센터
	6.21.(수)		의정활동 자료수집	
	6.22.(목)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23.(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행정기획	6. 15.(목)	10:00 ~ 18:00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16.(금)	10:00 ~ 18:00	안전생활국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19.(월)	10:00 ~ 18:00	행정문화국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0.(화)	10:00 ~ 14:00	석관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석관동 주민센터
		14:00 ~ 18:00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6. 21.(수)	10:00 ~ 14:00	정릉4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정릉4동 주민센터
		14:00 ~ 18:00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6. 22.(목)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3.(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 ■ 주요 감사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그 밖에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 세부 감사계획

### 1. 감사방법

-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 청취
- 감사자료, 각종 증빙서류 대조와 현장 확인
- 운영, 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2.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2023. 4. 25. (화) 까지
-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8조」

## 3.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업무전반 질의·답변 (현장확인, 증인 청취 등) ⇒ 감사종료 선언

##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 주의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감사위원과 사무 보조요원은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함.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

##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상임위원회 의결로 채택
  - 위원장은 감사 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감사 결과보고: 본회의 의결
  -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

### [붙임] 1. 선서문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3.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1부. 끝.





[붙임3]

#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안)

- ▷ 제1차 정례회 : 2023. 6. 2.(금) ~ 2023. 6.26.(월) [25일간]
- ▷ 행정사무감사 : 2023. 6.15.(목) ~ 2023. 6.23.(금) [9일간]

일 정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월일	시간				
6. 15. (목)	10:00 ~ 18:00		<b>복지교육국</b>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 복지과	<b>도시정비신속추진단</b>	<b>감사담당관</b>  <b>기획재정국</b>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6. 16. (금)	10:00 ~ 18:00		<b>복지교육국</b>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b>도시관리국</b>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b>안전생활국</b>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6. 19. (월)	10:00 ~ 14:00		<b>보건소</b>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b>건설교통국</b>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b>행정문화국</b>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14:00 ~ 18:00				
6. 20. (화)	09:00 ~ 14:00		<b>월곡1동</b>	<b>장위3동</b>	<b>석관동</b>
	14:00 ~ 18:00				
6. 21. (수)	10:00 ~ 14:00		<b>의정활동 자료수집</b>		<b>정릉4동</b>
	14:00 ~ 18:00				<b>성북문화재단</b>
6. 22. (목)	10:00 ~ 14:00	<b>의회사무국</b>			
	14:00 ~ 18:00	<b>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b>			
6. 23. (금)	10:00 ~ 14:00	<b>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b>			
	14:00 ~ 18:00	<b>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b>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운영위원회 소관]**

**성 북 구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 [운영위원회 소관]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 2. 감사기간

○ 2023. 6. 22.(목) [1일간]

※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 2023. 6. 2.(금) ~ 6. 26.(월) [25일간]

###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대상기관: 성북구 의회사무국

○ 대상사무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

###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운영위원회	이호건	정기혁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임태근 임현주, 정해숙, 진선아	전문위원 : 유천곤 담당 : 전상희 속 기 : 김병숙 이운영 ※ 필요시 추가지원

##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일정		감사 대상 기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22.(목)	10:00 ~	- 성북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6. 23.(금)	10:00 ~ 14: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 6. 주요 감사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그 밖에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7. 세부 감사계획

- 감사방법
  -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 청취
  - 감사자료, 각종 증빙서류 대조와 현장 확인
  - 운영, 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요구자료 제출: 2023. 4. 25. (화) 까지
  -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구

- 관계공무원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 출석장소 : 운영위원회 감사장 (성북구의회 제4회의실)
- 출석사유 : 주요 업무현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답변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 ⇒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업무전반 질의·답변(현장확인, 증인 청취 등) ⇒ 감사종료 선언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주의의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감사위원과 사무 보조요원은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함.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

##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 감사위원은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위원회 의결로 채택
  - 위원장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
  -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감사 대상기관(부서)·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수범)사항 등의 감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 보고 : 본회의 의결
  -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

[붙임] 1. 선서문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 선 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월 일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김용인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귀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성 북 구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 [보건복지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해당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3.(금) [9일간]

###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 대상기관

- 복지교육국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 보건소 :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 동 주민센터 : 정릉2동 주민센터, 월곡1동 주민센터

○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사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강수진	경수현,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전문위원 : 김동성 담당 : 김진경 속기 : 이윤영 ※ 필요시 추가지원

## 5.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일정		감사 대상 기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15.(목)	10:00 ~ 18:00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6.16.(금)	10:00 ~ 18:00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6.19.(월)	10:00 ~ 18:00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6.20.(화)	10:00 ~ 14:00	월곡1동 주민센터	월곡1동 주민센터
	14:00 ~ 18:00	정릉2동 주민센터	정릉2동 주민센터
6.21.(수)		의정활동 자료 수집	
6.22.(목)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23.(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

## 6. 주요감사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그 밖에 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7. 세부 감사계획

### ○ 감사방법

-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 청취
- 감사자료, 각종 증빙서류 대조와 현장 확인
- 운영, 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

### ○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구

- 출석 대상 : 복지교육국장 및 소관 부서장, 보건소장 및 소관 부서장, 동장,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참고인
- 출석장소 :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장
- 출석사유 : 주요 업무현황 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답변

###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관계공무원) ⇒ 국별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업무전반 질의·답변 (현장 확인, 증인 청취 등) ⇒ 감사종료 선언

###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증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주의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요원은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 감사는 공개함.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을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

##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 감사결과의견서 작성

- 감사위원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별로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의견서 작성

###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감사대상기관(부서)·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수범)사항 등의 감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 보고

-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본회의 의결)

[붙임] 1. 선서문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 북 구 의 회**  
**도시건설위원회**



#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산 심의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함

## 2. 감사기간: 2023. 6. 15.(목) ~ 2023. 6. 23.(금) [9일간]

## 3. 감사대상기관

-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도시관리국: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 동 주민센터: 장위3동 주민센터, 정릉3동 주민센터

##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이용진	박영섭, 이관우,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전문위원 : 이성호 담당 : 김진숙 속 기 : 김병숙 이윤영 ※ 필요시 추가지원

## 5. 감사장소: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및 해당 동 주민센터

## 6. 감사일정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월일	시간		
6.15.(목)	10:00 ~ 18:00	도시정비신속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6.16.(금)	10:00 ~ 18:00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6.19.(월)	10:00 ~ 18:00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6.20.(화)	10:00 ~ 14:00	장위3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14:00 ~ 18:00	정릉3동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
6.21.(수)		의정활동 자료수집	
6.22.(목)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23.(금)	14:00 ~ 18:0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

## 7. 감사실시 범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 8. 감사진행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피감사기관 선서 및 간부소개
- 소관 업무현황 및 특별요구사항 보고 청취
-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 감사결과 총평
- 감사종료 선언

## 9. 감사방법

- 감사는 자료 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10. 감사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 감사요구자료 제출: 2023. 4. 25.(화)까지
-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사기간 내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 관계공무원의 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

## 11.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 금지

## 12.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의 참여금지

### 13. 감사상의 주의의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금지

### 14.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2조)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보고서에는 감사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결과 및 기타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
- 작성방법
  - 감사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본회의 의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붙임] 1. 선서문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 북 구 의 회**  
**행정기획위원회**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 1. 감사의 목적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해당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3.(금) [9일간]

※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 2023. 6. 2.(금) ~ 6. 26.(월) [25일간]

###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대상기관

- 감사담당관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 행정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 동 주민센터: 석관동 주민센터, 정릉4동 주민센터

○ 대상사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조례』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

###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행정기획위원회	정윤주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양순임, 정해숙, 진선아	전문위원 : 정진만 담당 : 김용희 속 기 : 김병숙 ※ 필요시추가지원

## 5. 감사 일정 및 장소(안)

감사 일정		감사 대상 기관	감사장소
월 일	시 간		
6. 15.(목)	10:00 ~ 18:00	-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16.(금)	10:00 ~ 18:00	- 안전생활국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19.(월)	10:00 ~ 18:00	- 행정문화국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 민원여권과)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
6. 20.(화)	10:00 ~ 14:00	- 석관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석관동 주민센터
	14:00 ~ 18:00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6. 21.(수)	10:00 ~ 14:00	- 정릉4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정릉4동 주민센터
	14:00 ~ 18:00	- 성북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6. 22.(목)	14:00 ~ 18:0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6. 23.(금)	14:00 ~ 18:00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성북구의회 제 3 회의실

## 6. 주요감사사항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 현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그 밖에 규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

## 7. 세부 감사계획

- 감사방법
  - 감사대상 부서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보고 청취
  - 감사자료, 각종 증빙서류 대조와 현장 확인
  - 운영, 시책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
- 감사자료 제출 요구
  -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요구 자료는 의장을 통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기한:2023. 4. 25.(화) 까지)
- 관계공무원 및 증인.참고인 등 출석 요구
  - 출석 대상 :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국장 및 부서장, 동장,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참고인
  - 출석 장소 : 행정기획위원회 감사장
  - 출석 사유 : 주요 업무현황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답변
- 감사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관계공무원)⇒ 국별 간부소개 ⇒ 업무현황 보고 청취 ⇒ 업무전반 질의.답변(현장확인, 증인 청취 등) ⇒ 감사종료 선언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

-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 감사주의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요원은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감사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감사는 공개함.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보

## 8.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 의견서 작성

- 감사위원은 기획재정국(공단 포함), 안전생활국, 행정국, 동 주민센터 별로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내용

-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기간.감사대상기관(부서).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특기(수범)사항 등의 감사의견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 보고

- 위원장은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본회의 의결)

[붙임] 1. 선서문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서식 1부. 끝.



